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
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연 월 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,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는 내용으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91호, 2025. 4. 1. 공포, 2025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명령(안 제15조의2)

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 세부절차, 교육기관, 교육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자, 교육시간,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장소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교육대상자가 관리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
2.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

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.

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종료한 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자, 교육시간,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장소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교육대상자가 관리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</u> <u>2.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</u> <u>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.</u> <u>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종료한 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</u>

보고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15